

인정되는 시민권 및 신원 증명 서류

새로 제정된 법에 의하면,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인 대부분의 Medi-Cal 신청인과 수혜자는 시민권 증명서 및 신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저희는 아래의 리스트에 포함된 서류만을 인정합니다. 해당 서류의 원본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 기관으로부터 인증 사본을 입수해야 합니다. 사진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시민권 증명서와 신원 증명서를 한 번에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래의 서류 중 **한가지를** 제출하는 것입니다.

- 제한 조건이 없이 발급된 미국 여권(유효 기간이 만료된 여권도 인정)
- 귀화 증명서(N-550 또는 N-570)
- 미국 시민권 증명서(N-560 또는 N-561)

- 또는 -

위와 같은 서류가 한 가지도 없으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십시오.

아래의 리스트에 포함된 시민권 증명 서류 중 한 가지

- | |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미국 출생 증명서 ❖ 출생 신고 증명서(DS-1350) ❖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 출생 신고서(FS-240) ❖ 미국 국무부 출생 증명서(FS-545 또는 DS-1350) ❖ 미국 시민권자 신분증(I-197 또는 I-179) ❖ 아메리칸 인디언 신분증(I-872) ❖ 북마리아나 제도 주민 신분증(I-873) ❖ 미국 내 출생지가 표시된 최종 입양 판결문 ❖ 미국 외 지역에서 출생했고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의 법적/신체적 보호를 받고 있는 자녀에 대한 입양 증명서(IR-3 또는 IR-4) ❖ 1976년 6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미국 공무원 재직 증명서 ❖ 미국 내 출생지가 표시된 미군 복무 기록 ❖ 출생 시 작성된 미국 병원 기록 *† ❖ 생명보험, 건강보험 또는 기타 보험 기록 *† ❖ 미국 내 출생지와 출생일 또는 연령이 표시된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작성된 종교 기록 ❖ 미국 내 출생지, 입학일, 출생일, 부모의 이름과 출생지가 표시된 초기 학교 기록 ❖ 신청인의 연령과 미국 시민권 또는 출생지가 표시된 연방이나 주의 인구조사 기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세네카 인디언 부족 인구조사 기록 *† ❖ 인디언 업무국(Bureau of Indian Affairs)의 나바호 인디언 부족 인구조사 기록 *† ❖ 미국 각 주의 인구 동태 통계국에 등록된 출생 통지서 *† ❖ 자연 미국 공공 출생 기록(출생 후 5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기록) *† ❖ 출산을 담당한 의사 또는 조산사가 서명한 진술서 *† ❖ 인디언 업무국(Bureau of Indian Affairs)의 알래스카 원주민 명부 *† ❖ 미국 내 출생지가 표시된 간호 또는 전문 보호 시설(skilled care facility)이나 기타 기관의 입원 서류 * ❖ 의료 기록(예방접종 기록은 제외) *† <p>* 최초 Medi-Cal 신청일로부터 최소한 5년 이전의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고 미국 내 출생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.
† 1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서류는 출생과 가까운 시점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.</p> |
|--|---|

가능한 한 리스트의 위쪽에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위와 같은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:
2명의 성인에게 시민권 진술서(Affidavit of Citizenship)를 작성 및 서명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. 이러한 성인들은 모두 자신의 미국 시민권 및 신원에 대한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, 그 중 1명만이 친척이면 됩니다.

- 그리고 -

아래의 리스트에 포함된 신원 증명 서류 중 한 가지

- | |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미국의 주 또는 영토에서 발급되었고 사진이나 신원 확인이 가능한 다른 정보가 들어있는 운전면허증 ❖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❖ 미군 신분증 또는 징병 기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신원 정보가 들어있는 연방, 주, 지방 정부 신분증 ❖ 미군 부양 가족 신분증 ❖ 미국 여권(제한 조건이 있는 여권) |
|---|--|

뒷면에 계속

- ❖ 인디언 혈통 정도 증명서 또는 기타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/알래스카 원주민 부족 증명 서류
- ❖ 미국 해안경비대 상선 선원 신분증
- ❖ 직원 신분증,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대학 학위증, 결혼 증명서, 이혼 확인서, 재산 양도/소유 증서와 같은 3 건 이상의 확인 서류
- ❖ 16 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클리닉, 의사 또는 병원의 기록
- ❖ 16 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학교, 유아원 또는 보육원의 기록(성적표 포함). 카운티는 이러한 기록을 교육기관에 확인합니다.
- ❖ 요양소 거주 장애인에 대한 요양소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서명한 진술서

시민권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**16 세 미만의 자녀**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- ❖ 자녀의 부모, 보호자 또는 자녀를 돌보는 친척이 서명했고 출생지와 출생일이 표시된 자녀의 신원 진술서
- ❖ 자녀의 부모, 보호자 또는 자녀를 돌보는 친척이 서명했고 출생지와 출생일이 표시된 Medi-Cal 신청서 또는 Healthy Families/Medi-Cal 통합 신청서

18 세 미만의 자녀가 학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, 보호자 또는 자녀를 돌보는 친척이 서명한 자녀의 신원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주: 유효 기간이 만료된 신원 서류도 신원 증명서로 인정됩니다.